

ESG위원회 운영규정

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ESG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 ①위원회는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.

②심의 및 의결 사항

가. ESG위원회에 부의할 사항

- ESG경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- ESG중장기 목표의 설정

나. ESG위원회 보고 사항

- ESG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-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

다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고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다.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구 성) ①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(소집권자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0조(통지의무)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를 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2 조(간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
②간사는 재무회계담당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3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